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6

발의연월일: 2024. 7. 2.

발 의 자:이해식・위성곤・서영교

이기헌 • 박상혁 • 한병도

서영석 · 강선우 · 김성회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및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 (이하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합성대마를 흡입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약물운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달리 약물운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45조가 선언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이를 단속할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약물운전을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이 실무상 불가능하고, 위반 여부 판단도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빈번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약물운전 금지를 규정한 현행 제 45조를 상세히 규정하고,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 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및 제45 조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호흡조사를 통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면 아니 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마약"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마약"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전자에 대해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

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의2제2항 중 "한정한다)은 1년"을 "한정한다) 또는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호흡조사 개시 직전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은 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전 금지) ① ~ ④ (생 략)	전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
	승)
<u> <신 설></u>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
	<u>찰공무원의 호흡조사가 개시되</u>
	기 직전에 호흡조사를 통한 측
	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을 추가로 마시면 아니 된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
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지) ①
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	
는 약물(<u>마약</u> , 대마 및 향정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	<u>법률」 제2조의 마약</u>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	
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8조의2(벌칙) ① (생 략)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전자에 대해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따라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 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8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음)
 - ② -----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정한다) 또는 제44조저	115
항을 위반하여 호흡조사에	
한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立
적으로 호흡조사 개시 직전	<u>술</u>
<u>을 추가로 마신 사람은 1년</u>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